

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. 4. 18 선고 2022가단60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3. 28.

판 결 선 고 2023. 4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4 지분에 관하여 2000. 10. 25.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: 자백간주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 배예선

별지